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련기관 지정 시 갖추어야 할 시설·장비 기준에 현재의 진료 현실과 활용도가 낮은 구형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경직된 장비 기준을 정비하고,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) 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(齒科醫師專攻醫)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
2. 치과의사로서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제13조제5항 중 “합격자 결정은”을 “합격자는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시설 및 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설 및 기구	1 치과용 진료의자: 각 과별 2대 이상 2. 구내 방사선촬영기 및 구외 방사선촬영기: 각 1대 이상
---------	---

	3.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(PACS 시설): 1대 이상 4. 구강병리검사실, 의무기록실, 치과기공실, 회의실, 도서실 및 중앙 소독실, 당직실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 기관일 경우에만 해당한다)을 갖출 것
--	---

별표 1 제2호 소아치과란 및 영상치의학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아치과	1. 기공실(Dental Laboratory) 소독실(Sterilization Room) 회복실(Recovery Room) 2. 소아전용치과용 진료의자(Dental Unit Chair for Pediatric Patient) 신체억제장치(Pedi-wrap) 사진촬영기(Dental Camera) 흡입마취기(N ₂ O Equipment) 보존치료기구 세트(Instrument Set for Restoration): 5세트 이상 소아교정기구 세트(Instrument Set for Orthodontic Treatment): 2세트 이상 환자감시장치(Patient Monitoring Equipment) 응급세트(Emergency Kit)
------	---

영상치의학과	1. 구내 방사선촬영기(Intraoral Radiography Apparatus): 2대 이상 2. 구외 방사선촬영기(파노라마 방사선촬영기에 부착된 두부규격 방사선촬영기를 포함한다. Extraoral Radiography Apparatus include Cephalometric Radiography Apparatus attached to Panoramic Radiography Apparatus)
--------	---

	3. 파노라마 방사선촬영기(Panoramic Radiography Apparatus) 4.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[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(PACS)] 5. 콘빔전산화단층촬영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 [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Apparatus(CBCT) or Computed Tomography Apparatus(CT)]
--	--

별표 2 제1호 시설 및 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설 및 기구	1 치과용 진료의자: 각 과별 2대 이상 2. 구내 방사선촬영기 및 구외 방사선촬영기: 각 1대 이상 3.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(PACS 시설): 1대 이상 4. 구강병리검사실, 의무기록실, 치과기공실, 회의실,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, 당직실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일 경우에만 해당한다)을 갖출 것
---------	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) 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(齒科醫師專攻醫)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.		제2조(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) 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		
		1.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(齒科醫師專攻醫)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		
		2. 치과의사로서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		
제13조(시험 과목 및 방법) ① ~ ④ (생략)		제13조(시험 과목 및 방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
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		⑤ ----- 합격자는 ----- -----		

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.

-----.